

□ 사건의 경과

| | |
|---------|--|
| 사 건 번 호 | 울산지방법원 2007고정713 |
| 피 고 인 | ○○○ 외 3 |
| 쟁 점 | 송전탑 설치공사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면서 진입로 부근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여부 |
| 결과 (주문) | 무죄 |
| 참 고 조 문 | 형법 제314조, 형법 제21조, 형사소송법 제325조 |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검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천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로 기소

○ 쟁점

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기업의 위 송전탑 설치공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양정동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위 공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상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○ 법원의 판단

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할 당시에는 송전탑 설치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, 소음 등이 다량 발생하고 있었고, 나아가 산림의 절개 등으로 산사태 또는 낙석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공사는 그와

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양정동 일대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, 또는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고, 피고인들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직 행정정보공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이전에 시행사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간작업 등을 통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,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와 같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,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하고,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와 같이 각 공사현장 진입로에 공사차량 등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 자신을 비롯한 위 양정동 일대 주민들의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, 이는 가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함.

□ 판결의 의미

-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혐오시설 공사에 대하여 일응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저지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 공사의 경위 및 경과, 주민들의 권익에 대한 법적 구제가능성, 공사업자와 주민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법한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당방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한 사례임.